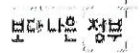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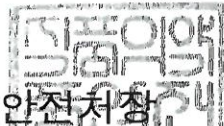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알림

1. 마약류취급자가 제조·판매·구입·조제·투약 등 취급내역을 취급자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18-113호)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이사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마약류 취급보고용 연계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업체 대표

주무관 한원선 사무관 김영아 마약정책과장 김명호 전결 2018.12.27.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688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43-719-2800 / lucyah@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관련 : 의약품관리과-7176호(2018.10.29.)
2.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017.12.13. 총리령 제1429호)에 따라 신설된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제도의 구체적인 보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규정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약국정보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대한한약사회

사무관 조야타 의약품관리과 전결 2018. 12. 27.  
장 김유미

협조자

시행 의약품관리과-867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www.mfd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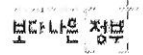
전화번호 043-719-2653 팩스번호 043-719-2650 / arahcho@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해외 안전성 정보 등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부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국무조정실장(규제 심사관리관),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조정관), 한국외약품안전관리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방의사협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주무관 이철승 연구관 김판순 의약품정책과 전결 2018. 12. 28.  
장 김상봉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1129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www.mfds.go.kr](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35 팩스번호 043-719-2606 / [pharm2000@korea.kr](mailto:pharm2000@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